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11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9. 6.

발 의 의 원 : 하중환 의원

1. 제안이유

- 달성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이 노약자,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군수 책무, 사업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사업조건, 영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라.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이 노약자,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및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일반음식점”이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으로써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업소를 말한다.
2. “영업자”란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이 조례에 따라 입식 테이블 설치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
3. “입식테이블”이란 노약자,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은 노약자,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편리하도록 식품접객업 환경개선사업과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재정보조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신규 일반음식점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입식테이블 설치를 권고하여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 대상)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일반음식점으로서 이동에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및 외국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 설치

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. 단,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로 한다.

제5조(사업 조건) 군수는 입식테이블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설치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
제6조(영업자의 책무) ① 영업자는 노약자,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영업자는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상 유지·관리하여야 하고,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폐업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.

제7조(지원의 제한)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,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
2. 1년 중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(과태료 부과 포함)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찬 성 자 서 명 부

의 원 명	서 명	날 인
김 은 영	김 은 영	